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비용기보증금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함
(안 별표8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-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타. 법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·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			
1)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외의 경우		200	250	300
2)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의 경우				
가) 영업장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경우		100	200	300
나) 영업장 면적이 165㎡ 이상 1,000㎡ 미만인 경우		50	100	200
다) 영업장 면적이 33㎡ 이상 165㎡ 미만인 경우		30	50	100
라) 영업장 면적이 33㎡ 미만인 경우		10	30	5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재활용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86